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1
----------	-----

2023. 6. 12.(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6월 12일

-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채홍경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재난대응 및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조정과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안 제3조)
- 지원단 구성, 단장임무 및 실무팀 편성 (안 제4조~제6조)
- 재난상황 공유·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기록
(안 제7조 및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가. 제정 목적

-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두어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타당함.
-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 및 현장 복구에 자원봉사자들이 역할 수행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및 활동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 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의2제5항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
- ‘안 제2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재난발생 장소 및 소관 시·군 지원단의 위치, 소관 시·군 자원봉사자의 규모, 자원봉사의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지원단 설치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지원단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충청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도모하였고,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음(표1 참조).
 - 단원은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기관의 직원,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단장의 임무에 대한 것으로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단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도록 명확히 규정함(표1 참조).
- ‘안 제6조’는 효율적인 인력 및 자원 지원, 시·군과 중앙 간 연계를 위해 실무팀 편성의 근거를 마련함(표1 참조).

[표 1] 충청북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실무팀 구성 및 업무

구분	구성	업무
단장	· 단장: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장, 자원봉사센터장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조정
상황 총괄팀	· 팀장: 자원봉사 담당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 상황 보고서 작성 및 지대본 보고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재정적 지원 · 시·군과 중앙기관과의 연계업무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
대외 협력팀	· 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 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 시·군 및 타기관 단체간 협력 지원
현장 파견팀	· 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 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 시·군 지원단 파견 · 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보고 및 기타 현장 지원업무 추진 · 자원봉사자 수송지원 · 임시대피소 운영지원
자원 지원팀	· 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 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 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및 안전조치 · 타시도 재난자원 요청 및 관리

※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 공동단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안 제7조’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 현황과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해 지원단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단장은 봉사활동 내역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규정하였음.

- 대책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 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하여 재난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는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지원단 운영의 보완 등을 위해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근거를 규정하였음.

- 현재(2023년 5월 기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14개 시·도이며, 충청북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는 미 제정임.(표2 참조)

[표 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서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0.17.
2	부산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7.6.
3	대구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10.11.
4	인천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4.21.
5	광주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11.4.
6	대전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12.29.
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7.15
8	경기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3.1.2.
9	강원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12.23.
10	전북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4.15.
11	전남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10.13.
12	경북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9.22.
13	경남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12.29.
1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1.4.14.

다. 종합 검토의견

- 최근의 재난은 다양화, 복잡화, 대형화로 인해 민간 차원의 자원 봉사활동만으로는 재난·재해 피해복구 및 수습을 위한 대응과 대처가 어려운 현실임.
- 이러한 재난현장의 문제점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단, 재난의 다양화, 복잡화, 대형화 등 재난유형 및 규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난상황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 또한, 지원단의 민·관 공동단장의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4개 실무팀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 시·군과의 연계업무 등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의 성패를 가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충청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재난발생 장소 및 소관 시·군 지원단의 위치
2. 소관 시·군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

당 부서의 장과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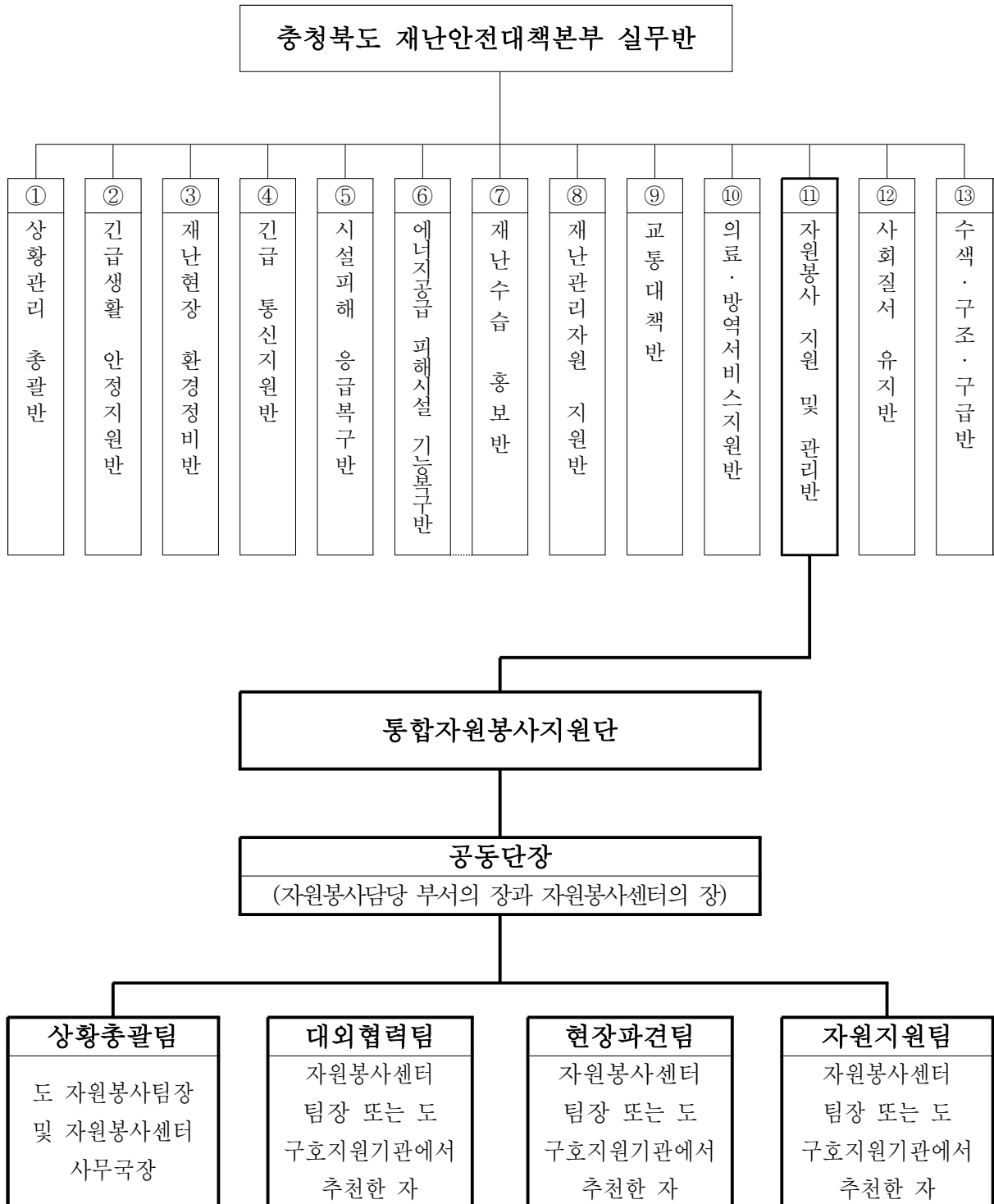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지원단의 인력·자원 지원 현황, 시·군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충청북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충청북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구 성	업 무
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장, 자원봉사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조정
상황 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자원봉사 담당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보고서 작성 및 지대본 보고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재정적 지원 · 시·군과 중앙기관과의 연계업무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
대외 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 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 시·군 및 타기관 단체간 협력 지원
현장 파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 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지원단 파견 · 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보고 및 기타 현장 지원업무 추진 · 자원봉사자 수송지원 · 임시대피소 운영지원
자원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 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및 안전조치 · 타시도 재난자원 요청 및 관리

※ 단장은 재난의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팀의 편제와 구성인원 및 담당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④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 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3(구호지원기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같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재난대응 및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조정과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비용 발생 요인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시 지원단원에 대한 교육 및 구호물품, 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발생 가능

3. 관련조문 : 해당없음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시 소요예산
- 추 계 기 간 : 2023년부터 2027년부터 5년간으로 함
- 추 계 결 과 : 25,000천원(도비 100%)
 -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지원단 교육 및 간담회, 구호물품 등)
-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신규로 수반되는 사항은 없음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행정국 도민소통과장 신용찬

